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정¹, 남세현^{2*}

¹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²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A Study on Improvemen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ort System for the Work Disabled in Korea

Mi-Jung Kim¹, Se-hyun Nam^{2*}

¹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Jung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Han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과 연구 목적을 절충한 분석 틀에 따라 신청 절차,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구직 또는 근로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보조공학 지원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원 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신청자격 확대가 시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실천을 위한 제반 조건 실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 방향이 정립되어 장애인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선택권과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장애인, 작업 보조공학기기, 보조기기 지원제도, 직업재활, 보조기기 서비스

Abstract The study i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ATD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ATDs support system for work. As a method,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were investigated to derive implications can be applied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that compromised Gilbert and Terrell's policy analysis model and research purpose. Next, a survey was conducted on 202 disabled supported ATDs for Work. They were looking for a job or working. We would like to suggest a plan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pport process centered on consumers. Second, the expansion of items and supplementation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ird, it is urgent to expand the application qualifications. Finally, the foundation for improvement should be continuously laid. We expect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will be established.

Key Words : the Disabled, assistive technology devices(ATDs) for Work, ATDs support system, vocational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Se-Hyun Nam(namsh@hs.ac.kr)

Received October 27,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4,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따라 장애를 사회환경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전략에서도 직업조정 관점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보조기기의 활용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적절한 보조공학기기 활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수행의 제한을 감소시킨다[1-4].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작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약 80억원의 예산 규모로 7,582건이 지원되었는데 지원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으며, 사용 전후에 생산성과 직무만족도 또한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 접수 및 신청 절차에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신청접수의 절차적 문제, 신청 후 지원까지 소요기간, 사후관리,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 수집의 어려움, 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 및 자료 제공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즉,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2].

2016년 이후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정 목적과 보조기기 활용 취지를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 최소화로 명시하여 보조기기를 활용할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다[5]. 한편 현행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법 제20조 및 제21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석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지원 신청(신청서 제출)이나 보조공학 기기수령,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주체로 제한한다[6, 7]. 이러한 절차는 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판단과 신청 결정을 사업주의 권한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중증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신청주체의 추가 업무 야기에 따른 고용 상 불이익 발생 또는 이에 대한 염려로 보조기기의 신청에 소극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제도의 협소한 해석에서 기인된 사업주 중심의 신청 절차가 직업생활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로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신청과 활용, 나아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사업주 지원'은 장애인의 직업 측면에서의 제약 최소화, 고용 촉진, 사회참여 및 자립 실현의 수단으로 간

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 제도 및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조기기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황 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지원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국내·외 보조기기 지원 사례

국내 및 해외의 보조기기 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과 연구 목적을 절충한 분석 틀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은 사회서비스의 산출분석에 초점을 두고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는 사회복지정책분석 모형으로, 누가 급여를 받는가? 급여 형태는 무엇인가? 급여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으로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문제 개선이 필요할 때 정책적 방향성 제시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8, 9]. 적용한 분석 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 analysis framework for ATDs support

Dimension		Criteria
Allocation	Target of provision	Target of support Applicant's qualifications
Provision	Type of support	Support type and scope
Delivery	The application process	Application process Service providers Service organization
Finance	Financial resources	Legal system, Ownership Support rate (& Applicant's Responsibilities)

2.2 국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 : 설문조사

2.2.1 조사기간 및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기기 지원 경험이 있는 근로장애인과 직업훈련(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8월에 약 3주간 온라인 설문 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212명의 장애인으로

부터 회신을 받았고, 응답성실도가 현저히 낮은 10명을 제외한 202명의 응답을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

2.2.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연구 목적에 따라 지원 제도과 절차를 중심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정보, 장애특성,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급과정에 대한 경험, 지원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특성과 경험에 따라 문항 구성을 달리하여 근로장애인용 29문항, 구직장애인용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보조공학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에 의해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rea	Number of Questions	
	Working disabled	Looking for a job
General information	6	4
Disability characteristics	6	6
Experiences related Application&payment	13	12
Improvement comments	4	5
Total	29	27

3. 연구결과

3.1 국내·외 지원제도 사례조사

3.1.1 해외 보조기기 지원 사례

미국(Vocational Rehabilitation), 아일랜드(Workplace Equipment/Adaptation Grant, WEAG; Employee Retention Grant Scheme, ERGS) 및 영국(Access to Work, AtW)의 직업 관련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10-15].

3개국 모두 직업재활, 고용현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폭 넓게 보조공학기기 적용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근로자 신분의 장애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 사업 운영자,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같이 고용 상태나 특성을 망라하여 필요한 보조기기가 제공되고 있었다. 신청 주체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장애인 직접 신청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는 장애인과 민간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Table 3. Target of provision by country

Country	Criteria and contents	
USA	Target	Working person with disabilities Includes self- employed or looking for a job
	Applicant qualificati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reland	Targe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contracted paid work for at least 8 hours/week or are self-employed
	Applicant qualifications	Private Sector Employers Work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UK	Target	Employers or a person with disabilities 16 years old or older(who has a job, or is starting a job, or is self-employed, trainee, or intern)
	Applicant qualifications	disabled working people

다음으로 지원 유형 및 범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및 기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일랜드는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 영위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개조/제작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 급여 및 훈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국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초 £300~£10,000의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다.

Table 4. Type and scope of support by country

Country	Criteria and contents	
USA	Support Typ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raining and related services
	Limit	\$10,000
Ireland	Support Type	Cash support(for the purchase, adaptation of equipment and training)
	Limit	€6,350(Max. support limit €9,523 for special training)
UK	Support Type	Cash grant(Purchasing assistive devices and services needed to perform work, commute to work)
	Limit	£ 57,200(as of 2018. 4)

세 번째로 신청 과정에 초점을 둔 전달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각 나라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신청서와 부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반면 미국은 개별고용계획서상의 동의를 서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3개국 모두 신청 후 전문가에 의한 심사 또

는 승인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application process

Country	Criteria and contents	
USA	Organization	Departmen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ocuments	No (Consent in individual employment plan)
	Process	Consultation request→Evaluation→Reporting→Schedule plan→Purchase→Adjustment→Training→Use→Follow-up
	Service provider	rehabilitation counselor Assistive Technology expert
Ireland	Organization	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
	Documents	Application form, medical proof, estimate
	Process	Application(online/phone)→Review →Expert recommendation→Approval→Support
	Service provider	Person in charge of 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 specialist in Assistive technology
UK	Organization	Job Center Plus
	Documents	Separate application form
	Process	Application→Evaluation→Approval →Order→Submit Invoice→Support→ Evaluation
	Service provider	Person in charge of Job Center Plus

끝으로 재정과 관련된 차원이다. 지원에 따른 수요자 책무 역시 3개국 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 미국은 지원대상의 재정적 부담 없이 개별고용계획서에 명시된 직업 목표의 달성을 책무로 부과한다. 반면 아일랜드는 신

Table 6. Comparison of Financial resources

Country	Criteria and contents	
USA	Legal system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s Rehabilitation Acts section 504
	supported rate	in full (* Applicant's Responsibilities : Achieving and Maintaining vocational goals)
	Ownership	Persons with disabilities
Ireland	Legal system	Employment Equality Acts
	supported rate	in full * Applicant's Responsibilities - payment VAT
	Ownership	Private Sector Employers or work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UK	Legal system	Equality Act 2010
	supported rate	80% of the initial costs (Employers pay 20%)
	Ownership	Government

청자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일부 자부담을 부과하며, 영국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부 부담금을 차등 납부하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3.1.2 국내 보조기기 지원 유관사업

우리나라에서 부처별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8개의 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의 조건은 경제적 상황, 장애 등록 또는 기타 자격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주를 신청 주체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의 작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모두 보조기기 수요자와 신청 주체가 동일하였다.

신청과정에서 접수방법과 접수기관은 각 사업마다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방문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기관으로 방문접수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공서나 주관기관의 지역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비방문 접수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크게 신청(청구)서류와 처방(증명)서류로 구분되는데, 사업과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였다. 대부분이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이 우선되고, 해당 사업에 적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류 또는 처방전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조기구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특수교육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4개 사업은 수요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경우 기준금액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더하여 기준 금액 이상인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16]. 작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경우 신청자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와 '고용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제출' 등을 수요자 책무로 부과하고 있다[7].

3.2 국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

3.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78.2%는 근로장애인이었으며, 연령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직업의 경우 근로장애인은 현재 종사하는 직종으로, 구직장애인은 구직 희망직

중으로 응답받은 결과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age(%)
Work identity	Working	158	78.2
	Looking for a job	44	21.8
Age (yr)	16-29	24	11.9
	20-39	62	30.7
	40-49	61	30.2
	50-64	55	27.2
disability type	Physical disability	98	48.5
	Brain lesion disorder	20	9.9
	visual impairment	47	23.3
	Hearing impairment	32	15.8
	Metal retardation	1	0.5
	etc.	4	2.0
Occupation	Manager, expert	44	21.8
	Office worker	105	52.0
	Service/Sales	14	6.9
	machine operation	11	5.5
	Simple labor	7	3.5
	Etc.	20	9.9
Business size* (number)	1-4	25	15.8
	5-49	70	44.3
	50-299	38	24.1
	300-999	13	8.2
	Above 1000	12	7.6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15	9.5
	1-3 years	38	24.1
	3-10 years	76	48.1
	10 years or more	29	18.4
Total		202	100.0

* Only for working disabled people

3.2.2 보조공학기기 신청/지급과정에 대한 경험

보조공학기기 신청~수령까지의 지원과정 각 단계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29.5%였으며, 70.5%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만족도 저하의 사유로 전체 응답자의 15.8%(22명)는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신청 이후 제품 수령까지 오랜 소요기간을 지적하였고, 이외에도 절차의 복잡성 14.4%(20명), 신청주체인 회사의 소극적인 태도 및 지원정보 부족 5%(7명), 예산부족 및 기기의 조기소진 4.3%(6명), 지급판정의 전문성 부족 2.2%(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원과정에 거치는 각 단계에 대한 만족도는 정보획득

단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수령 단계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신청~지원단계, 소요기간, 공단 담당자, 신청주체인 사내 신청업무 담당자,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만족도로는 소요기간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공단 담당자의 친절도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보조공학기기가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7.7%였는데, 신청은 했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통보받았다고 한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휠체어와 관련된 품목(36.8%) 지급을 희망했다.

Table 8. Satisfaction with ATDs support (n=202)

Satisfaction	M±SD	Min.	Max.
Information gathering step	3.49±1.23	1.0	5.0
reception stage	3.64±1.23	1.0	5.0
Support feasibility review step	3.67±1.15	1.0	5.0
notification stage	3.71±1.15	1.0	5.0
waiting step for support	3.71±1.20	1.0	5.0
Receiving step	3.78±1.16	1.0	5.0
Time taken to receive	3.45±1.24	1.0	5.0
Kindness of the staff	4.02±1.14	1.0	5.0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3.81±1.16	1.0	5.0
Application agent	3.87±1.19	1.0	5.0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process	3.74±1.12	1.0	5.0
Devices	3.95±1.05	1.0	5.0

3.2.3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개선 의견

보조공학기기 신청하는 방식을 변경한다면 사업주와 장애인 직접신청 병행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절차적 복잡성과 불편함(43.8%)을 지적했다. 사업주 신청과 장애인 직접신청이 병행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 응답자는 76.6%이며, 대

Table 9. Opinion for improvement

Item	Frequency (n)	Percentage (%)
Preferred application method (n=44)		
Employer application	5	11.4
Direct application for the disabled	17	38.6
Employer/disabled concurrently	22	50
Expectations according to direct application (n=202)		
Positive effects	155	76.7
No change	22	10.9
Negative effects	25	12.4

표적인 효과로는 적극적인 신청 기회 부여, 선택권 강화,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증가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 서류 준비의 어려움과 불편, 무분별한 신청이나 부당한 지원 사례 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확대, 품질 및 사후관리의 개선, 홍보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12.1%)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작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에 따라 국내외 보조기기 유관 사업을 지원 대상, 지원 유형 및 범위, 절차, 재원의 차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작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및 제안하고자 한다.

선진국 사례와 유관제도에 대입하여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4가지 차원으로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주제가 도출된다. 첫 째로 급여의 수급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임에도 고용주가 수급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주 등은 제외되어 있는 방식이 다른 제도나 외국과 다른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제도의 비효율이 일부 지적된다. 둘째로 급여의 형태는 현물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현금지급과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급여의 전달형태는 홍보와 안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영역에서는 국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으나 품목 다양화와 지원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절차 개선

우선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용주 중심 신청 방식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신청 차단, 장애인의 신청 동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온라인 설문 분석결과 현행 사업주 신청을 선호하는 장애인은 11.4%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장애인

이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신청하거나 다양한 신청 주체에 게 신청 경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희망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업주 신청 방식의 복잡성과 불편함 뿐 아니라 사업주나 회사 담당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청방식의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보조기기 활용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기대된다.

장애인고용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우선 정책대상이 장애인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됨에 따라 신청서 제출, 기기 수령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신청시 수반되는 행정적 행위에 대한 주체를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직업재활과 관련된 해외 보조기기 지원 사례 뿐 아니라 국내의 보조기기 지원 제도에서 정책 대상인 장애인을 신청, 지원 모두의 주체로 삼는 것과 대비되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는 사업주 대상의 무상 지원과 용자 사업의 도입 병행,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의무 이행과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기기 수령, 관리, 반납 등을 사업주의 행위로 부과해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업주 귀속 성격이 강한 고용시설 용자나 무상지원을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구분 짓고, 장애인 개인이 작업역량 및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청 방식 외에도 지원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기기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보조기기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설문에서 참여한 장애인들은 지원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획득의 기회가 있다면 직무 수행에 더욱 적합한 기기 선택·신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체험전시관(Happy Space)은 예약제 운영, 이용 인원 제한, 지리적 위치로 낮은 접근성과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장애인 직접 신청 방식으로 지원제도 개선을 고려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험 등의 정보제공 기회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4.2 지원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다음으로 지원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가 합리적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설문 결과에서도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나타났고, 이에 더하여 초기 품질 개선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는 46개 품목 290종이나,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인별 양상에 따라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하기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조공학기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품목 등록심사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품목추가 요청을 상시화하며, 심사 횟수를 확대하여 적어도 품목확대의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심사절차 간소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타 부처나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심사결과를 준용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3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범위 확대

협소하게 설정된 지원대상 범위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4명 이하 근로자 고용 및 자영업)의 장애인 사업주나 장애인을 고용했다라도 4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장애인고용법의 목적이나 같은 법 17조에서는 적극적인 창업지원으로 장애인 자가 고용을 유도하는 같은 법 17조와 충돌하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취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장 내 지위로 인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산하기관의 책임자나 관리자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고용 외 창업(자영업),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직업생활 영위를 염두에 두고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보조공학의 지원 대상을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등록된 장애유형과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한은 장애인이 업무상 겪는 어려움을 전적으로 장애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보조공학기기 활용의 목적성을 저해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지원범위는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의 보조공학 적용의 목적에 근거하되 장애인 직업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포츠 분야처럼 지원이 제한된 직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와 보조공학기기 품목 개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4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상기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시스템의 개편, 담당 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와 같은 조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안별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국내외 보조기기 유관사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향후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절차 개선, 지원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안된 방향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제도 개선으로 실천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 M. Rhee & Y. H. Jun. (2007).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ssistive Technology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1(3), 27-55.
- [2] K. M. Rhee & Y. H. Jun. (2013). *An Evaluation on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Provided by the KEAD*. Gyeonggi-do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3] S. M. Yang, D. I. Chun, & J. Y. Yoo. (2015). Assistive Technology Support Systems that Impact on Work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Awareness comparison of Employers and the Disabled Workers. *Disability & Employment*, 25(3), 35-49. DOI : 10.15707/disem.2015.25.3.002
- [4] S. B. Kim & O. S. Shim. (2018). Effects of Working Performanc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Disabled Workers with Assistive Technologies.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25, 5-22.
DOI : 10.22589/kaocm.2018.26.5

- [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12. 11).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 Act on the Support for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etc. and Promotion of Use Thereof. <http://www.law.go.kr>
- [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019. 11. 26).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www.law.go.kr>
- [7]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9. 17).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ort Business Rules No. 580*. <https://www.kead.or.kr>
- [8] N. Gilbert & P. Terrell. (2010).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7th ed.)*, Boston : Allyn & Bacon.
- [9] S. S. Shim. (2017). A Critical Review o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2010) and the principl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6, 237-268.
- [10] 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 (2019. 11. 6). *Operational Guidelines: Workplace Equipment Adaptation Grant (WEAG)*. <https://www.welfare.ie>
- [11]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02. 10. 17). *Enforcement Guidance: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due Hardship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ttps://www.eeoc.gov>
- [12]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2015. 8. 1). *How to get a private business to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 [13]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2016. 2. 1). *Obtaining Assistive Technology through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
- [14] Nordic Centre for Rehabilitation Technology (2007). *Provision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nordic countries 2nd ed.* <https://sid.usal.es>
- [15] Washington State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15). *Customer handbook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https://www.dshs.wa.gov>
- [16] S. H. Nam. (2016). The study of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535-542.
DOI : 10.14400/JDC.2016.14.10.535

김 미 정(Mi-Jung Kim)

[장학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보건학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인간공학치료학(인간공학치료학 석사)
- 2018년 8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조공학, 직업재활, 작업치료, 인간공학
- E-Mail : mjkim@jwu.ac.kr

남 세 현(Nam, Se-hyun)

[장학원]



- 1998년 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문학사)
- 2012년 8월 : 한신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정책, 사회서비스

- E-Mail : namsh@hs.ac.kr